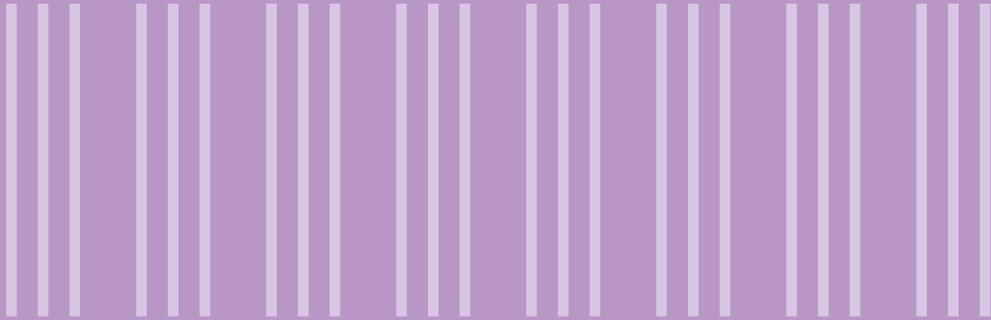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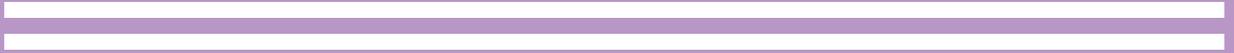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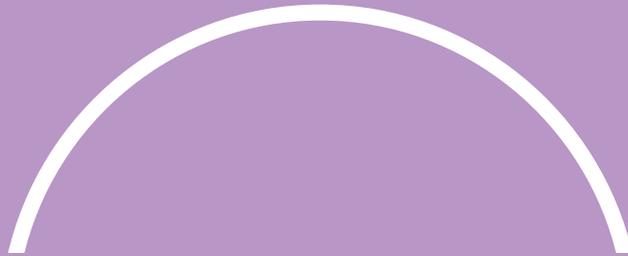




2023.10.16.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미래의제 | 23-05호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김태경, 이경수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김태경 부연구위원

이경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서론: 탈냉전기 남북 교류협력 법제도와 거버넌스
- 탈냉전기 남북관계 거버넌스: 경제협력
- 탈냉전기 남북관계 거버넌스: 사회문화협력
- 탈냉전기 남북관계 거버넌스: 인도협력
- 글로벌 교류협력 거버넌스
- 결론을 대신하여: 2단계 연구 방향

요약

■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 거버넌스 구조 분석의 필요성

- 탈냉전기 북한은 헌법 제3조,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이자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 등에 기초한 화해, 평화,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짐
 - 동시에 남북관계는 한국의 법제 하에서 적대적 배제와 암묵적 인정, 협력의 이중적 규율의 공간에 위치함
 - *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 · 평화 ·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이러한 법적 이중성 속에서 진전과 교착을 반복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는 진전과 교착을 반복해옴
- 1단계 연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전반적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평가 토대로 활용
 - 2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 분석에 바탕해, 30여 년 가까이 축적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 탈냉전기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개관

- 경제협력 거버넌스
 - 교역과 경제협력 등 투자사업을 벌이는 민간 기업을 정부가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시작됨
 -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가 마련해 둔 법적,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됨
 -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경험 거버넌스가 질적으로 변화함

요약

- 개성공단 개발과 작동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공단 운영을 정부가 맡게 되면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설립되어 반민반관 기구가 주요 거버넌스 행위자로 등장함
- 사회문화협력 거버넌스
 -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각계각층, 다양한 사회문화 의제의 인적 접촉,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이 형성되고 교류협력 사업을 통일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전됨
 - 사실상 규격화된 법제도,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기보다 민간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확대, 심화한 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부침을 겪는 패턴임
 - 예외적으로 역사학자협의회,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 사업은 상대적으로 정치화의 위험을 우회하는 의제이면서 남북한 민간이 사업 수요, 역량 면에서 비교적 동등성을 가지며 협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신뢰에 바탕한 거버넌스를 확립함
- 인도협력 거버넌스
 - 1990년대 후반 정부 당국의 창구 단일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인도협력 거버넌스는 전환적 국면을 맞음
 -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만 인도적지원이 가능하던 시기를 지나 각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북한과 협의해 물자를 지원하거나 개발협력 사업을 벌이는 등 단체별로 전문성에 기초한 사업을 진행하게 됨
 - 민간의 대북지원사업이 활발해지면서 2004년부터 정부 관계부처와 북민협 소속 단체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업 실행 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도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2011년 이후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한계를 보임

■ 요약 및 시사점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한은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협력에서 다각적 발전을 축적했으며 당국간, 당국-민간 사이 협력이 지속되면서 특유의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 진화함
-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안보적 위기 고조, 불신 심화가 다른 영역의 교류협력, 접촉의 지속성을 압도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정치적 안정성, 정당성에 바탕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성장한 민간 행위자 조직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공존·협력을 위한 남북한 내 기본법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
 - 2단계 연구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 진행할 예정임

1990년대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시작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기존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발했으며, 한반도에서도 상호 적대적이었던 남북한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대방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선언함으로써 냉전적 적대와는 다른 공간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인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유한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¹⁾ 국내법상 남북관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율되는 공간이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공간이 되었다.

탈냉전의 물결에 힘입어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적 계기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이다.²⁾ 1988년 7월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하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및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남북간 교역 개방 △남북간 대결 외교 지양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제도적 장치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고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밝힌다. 교류협력법 제정으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북간 인적 왕래, 물자 반출입, 통신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제4조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설치를 밝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가 정책을 협의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1) 대판(전) 2008. 4. 17, 2003도758;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참조; 박성철,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 『법학평론』, 5, 2015, p.211.

2)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북한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박성철 2015, p.212.

남한 내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남북한 간 고위급 대화가 병행되었다. 1988년 11월 북한은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군사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이 회답하면서 1989년 2월 예비회담이 처음 개최되었고, 1990년 9월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1차 회담이 개최된 이래 1992년 10월까지 8차에 걸쳐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1991년 12월 5차 회담에서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6차 회담에서 서명함으로써 합의서 효력이 발생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통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밝히며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가 아닌 남북관계의 잠정적 특수성을 명문화함으로써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을 정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위한 부문별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합의가 실천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1992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고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중단되었다. 1995년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당국과 민간인 인도적 지원이 실시된 것을 제외하면 당국간 교류협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 등 각 영역에서 남북 협력이 확대되며 2005년 12월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반영해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추천의 민간위원 9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둘 것을 명시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을 알렸다.

남북관계 사업 관련 거버넌스는 2000년대 전후 남북한 정부 당국간 관계는 물론 다양한 민간 기업, 시민사회 행위자가 개입하면서 당국의 독점적 형태가 아닌 민주적이고 광범한 남북협력의 틀을 확립해왔다. 법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 작동되었다. 당국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해 1992년 5월부터 판문점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해 핫라인 통화를 진행해 왔으며, 2005년 개성공업지구 가동 이후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건물에 남북한 당국자가 상주하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는 개성에 분소를 두고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과 실무협의 지원, 대북교역 및 경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폐쇄되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거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남북한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사회문화, 인도협력 등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했다. 2020년 6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한이 각각 대표를 상주시켜 ‘연합적’

거버넌스를 실험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연락사무소는 중단되었다.

브리프에서 살펴보게 될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지원의 경우 민간, 시민사회 NGO 등은 정부 당국의 관리 통제를 받거나 통합되는 한편 교류협력 사업의 행위자로 거버넌스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거버넌스 자문기구로, 2014~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운영되어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의 남북관계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 산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해 민간위원을 통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관계 부침에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이뤄져왔다.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2조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에 더해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교류협력 사업 추진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 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해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실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같은 시기에 〈남북관계발전법〉 또한 개정되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 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지자체 주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특히 당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시 제24, 25조를 신설해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갖춰 개정 법률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린다. 탈냉전기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는 미세하게 진전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가 북미, 남북 협상 교착,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 전환으로 실질적 작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은 다양한 영역, 다층적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기본법제의 체계적 정비와 이를 위한 광범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본 브리프는 외교통일위원회 수요에 대응한 수시과제(1단계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구조 개괄, 2단계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평가)의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주요 법제도 및 거버넌스 현황을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영역별로 분석한다. 인도적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거버넌스 외부의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활동도 고려했다.

1) 남북 경제협력 주요 법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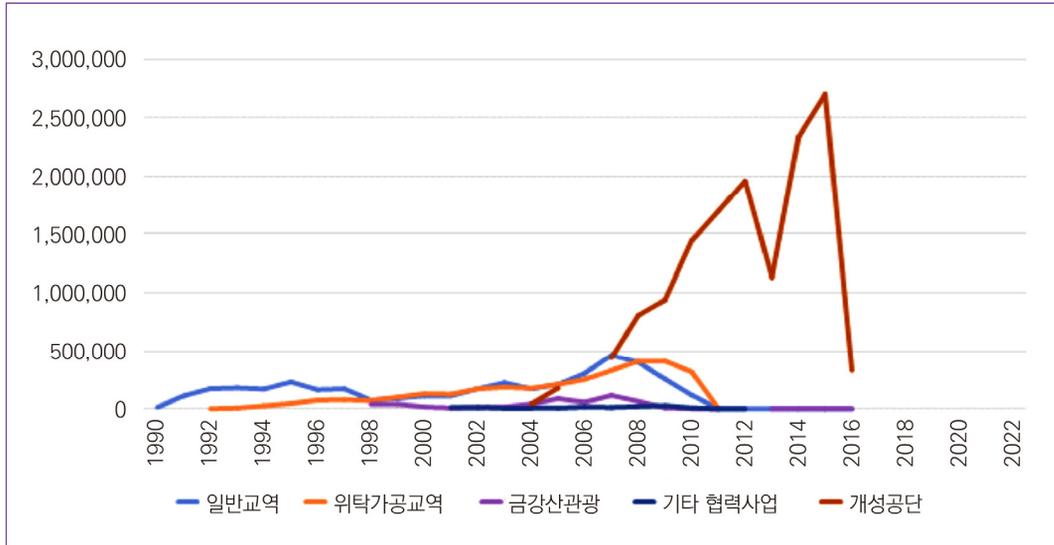
남북 경제협력은 크게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을 들 수 있다. 남북 간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교역으로 정의되며, 물품의 이동은 반입과 반출로 정의된다. 헌법상 남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기본합의서>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 정의된다. 남북 교류협력은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규율하는 <대외무역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제정한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른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전에도 1988년 7.7선언서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한 이래 대우가 같은 해 11월 북한산 도자기를 반입해 온 사례가 있으나,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야 남북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시행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 시 물품 반출입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력사업 실행 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2년 대우가 첫 협력사업자로 승인받았고, 1995년 남포 임가공 사업으로 최초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1998년 4월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어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 제한이 폐지되고, 협력사업의 투자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대북 위탁가공이 확대되었다. 같은 해 해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진전되면서 남북교역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돌입한다. 경제협력은 남북한 각각의 법제 및 민간과 당국의 개별 합의하에 진행되었다. 1992년 남북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를 협의하기로 한 바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이 정체되면서 협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 8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 협의에 뜻을 모으고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국제 기준과 관례를 따르면서도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작성된 것으로 남한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2003년 8월 발효되었다. 이로써 10여년 간 미루어졌던 남북 경제협력 법제화가 첫 발을 뒀다. 다만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품목 지정과 결제시스템 구축,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간 추가 협의를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추이 (반출입 합계, 1,000USD)



출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2023.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comn/login/plogin/cpttrLogin.do> (검색일: 2023.8.30.)

2003년 개성공업지구 착공 이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듬해인 2004년 12월 시범공단이 가동되고 첫 제품이 생산되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되어 사업을 뒷받침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폭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었다. 2005년 개정을 통해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했으며 2009년 개정을 통해 남북한 교역 대상을 물품 외에도 서비스(용역)과 전자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하며,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협력사업 승인 제도로 일원화했다.

남북 경제협력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 우리 영해 향해 불허 △방북 불허 △대북 투자사업 보류가 시행되며 사실상 개성공단을 통해서만 명맥을 이어갔다. 개성공단 또한 2013년 4~9월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고, 남북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정상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핵실험 등에 대응해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후 <개성공업지구법> 일부를 개정해 가동 중단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 조치가 일부 진행되어 현재에 이른다.

2) 남북 경제협력 주요 조직, 제도

탈냉전과 더불어 1988년 처음 북한산 물품이 남한에 도착한 이래 시작된 남북 경제협력은 2015년 개성공단 폐쇄 이전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남북간 단순교역과 임가공교역, 합영 및 합작기업 설립 등 투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999년부터 현대아산이 실시하는 금강산관광이, 2007년 개성관광이 시행되어 관광업으로도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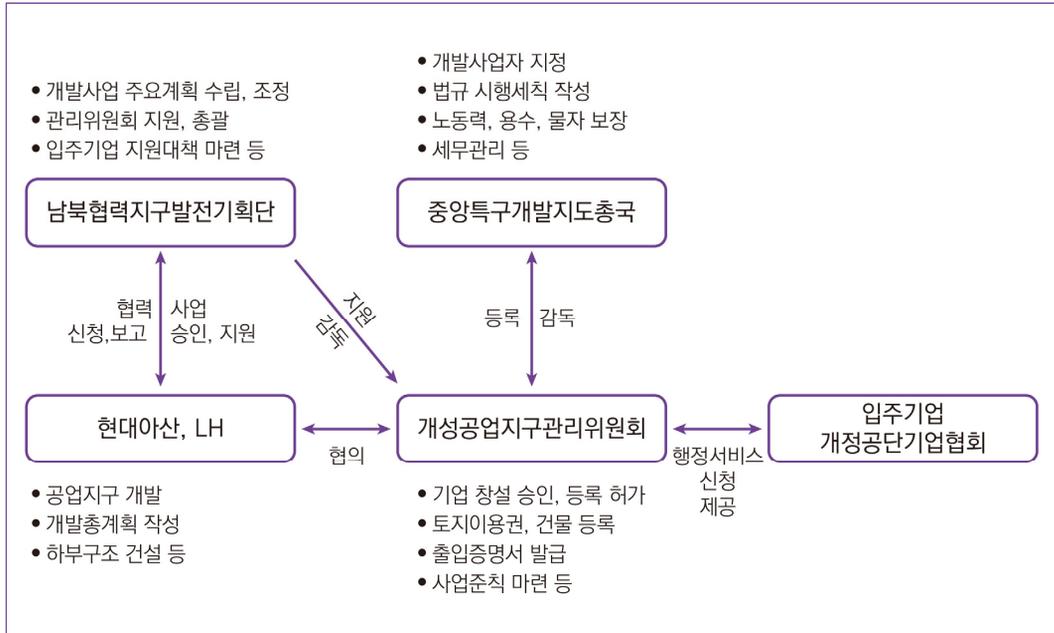
2004년부터 남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의 하에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되어 북한 노동자 5.5만여 명이 남한 기업에서 일하는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 2007년에는 북한에 임가공 원자재를 제공하고 광물자원으로 대가를 상환받는 ‘유무상통’ 방식의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되어 남북협력지원협회가 설립되었다.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개성공단 외 경제협력을 금지한 5.24조치 발효, 2016년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영 외적인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시행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하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현재 기부금 적립 허용, 장기차입 가능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안되었으나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07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과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운영 전반을 관할하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재단 이사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개발 사업자인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 개발과 건설을 진척시키는 한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내 제도 정비와 투자환경 개선, 사업준칙 작성 등을 협의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승인과 건설 인허가, 출입증 발급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북한 당국과 민간 기업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며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었으나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한을 포괄하는 공동 거버넌스 실험은 중단된 상태다.

[그림 2] 개성공단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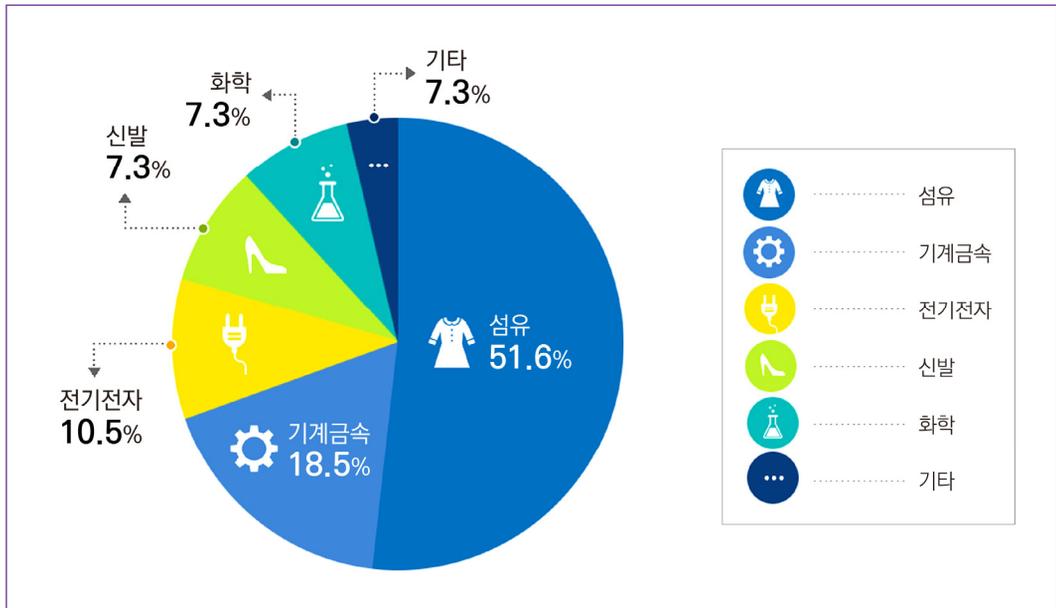
출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5년』(서울: 통일부, 2007),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23. <https://www.kidmac.or.kr/> (검색일: 2023.8.30.)

(2) 개성공단기업협회

2015년 12월 기준 개성공단에는 125개 남측 기업이 54,988명의 북측 노동자를 고용해 2015년 생산액 5.6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5년 시범공단 가동 시부터 누적된 생산액은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남측 입주기업 중 절반이 넘는 51.6%는 섬유 부문에, 그 다음 순인 18.5%는 기계금속 부문에 속한다(아래 [그림 3] 참조).

125개 입주기업은 2006년 5월부터 개성공단기업협의회(2009년 개성공단기업협회로 명칭 변경)를 설립해 개성공단 홍보와 회원사 간 정보 공유 등을 시행해 왔다. 2016년 공단 폐쇄 이후에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기업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림 3]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분야별 분포



출처: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23. <https://www.kidmac.or.kr/> (검색일: 2023.8.30.)

(3)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2014년 설립된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개성공단 외의 지역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에서 남북경협을 승인 받은 기업은 2014년 당시 일반 업체 801개, 위탁가공업체 247개, 합영 및 합작, 투자 기업 42개로 농수산물 의류 임가공, 지하자원, 관광업, 운수업, 판매업 등에 종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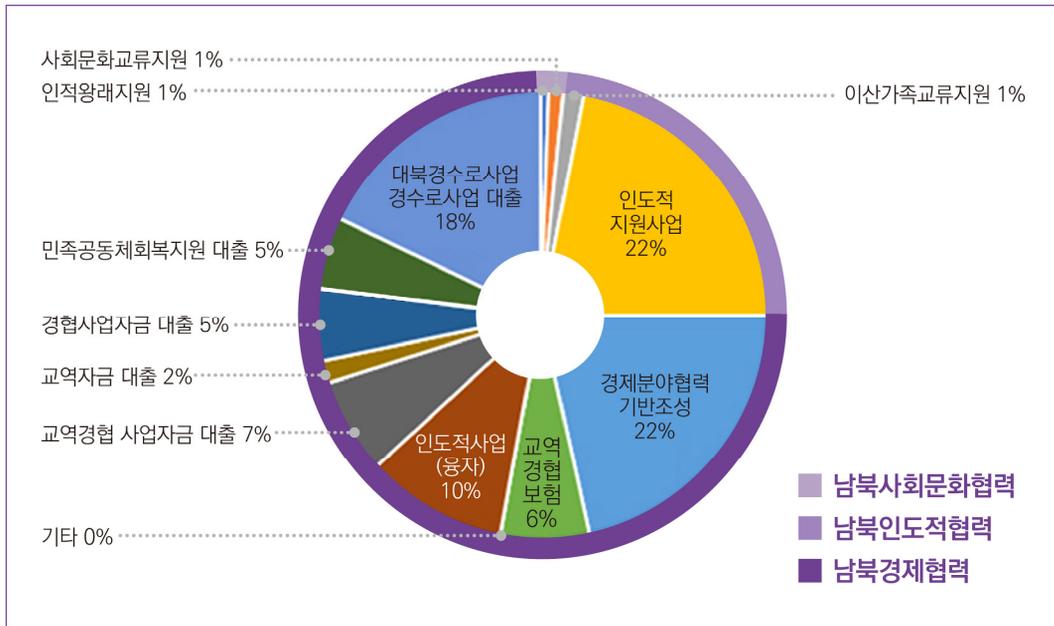
한편 개성공단 외 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은 2013년 말까지 92개로 전체의 50%는 금강산 내 숙박업체와 식당 등 편의시설을 운영해 왔고, 28%는 평양에서 사업 진행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실행 이후 개성공단 외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들 기업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광 재개와 사업 청산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4)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정부출연금과 차입금,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관리, 운용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간 왕래에 대한 무상지원,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대출 △교역·경협 보험 △대북 차관 등에 사용된다.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을 진행하는 KEDO에 대한 차관 공여, 인도적지원과 이산가족 교류, 남북 경제협력 사업 대출 등에 기금이 집행되었다. 기금은 한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요건 검토, 통일부 평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이 결정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2010년 개정을 거쳐 남북경협 추진 중 기업경영 외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 보조 또는 보험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가 확대되었으며 2023년 개정 시에도 기존 문화·학술·체육 분야 외에도 환경·학술·과학기술·정보통신·관광·보건의료·방역·교통·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등에도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2022년 12월 현재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16조 737억원이며 2023년 1조 8,004억 원 수입 및 지출(합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4] 분야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누계(1991~2022)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2023. 연도별 기금현황
<https://www.koreaexim.go.kr/se/HPHFSE054M01> (검색일: 2023.8.30.)

(5)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6년 6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듬해인 2007년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실행기구로서 설립되었다. 남한이 의복,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북한이 광물자원으로 제공하기로 한 데 따라 2007~8년 남한은 8,000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제공했고, 북한은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의 아연과 1,005톤을 남한에 상환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 사업의 실9행을 담당하는 한편 합의서에서 명시한 남북한 공동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검덕 연·아연 광산, 대흥·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매장량 및 인프라를 공동조사한 바 있다.

지하자원 개발 외에도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설비 지원 및 유지 보수, 남북 유해발굴 자재 장비 지원, 남북 산림협력, 한강하구 남북 공동조사 등 당국간 협력사업도 진행해 왔다. 2009년부터 2009년부터 남북교역·경협 관리사업에 착수했으며, 2015년부터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방북신청,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반출입 물품 제재 여부 등을 예비 검토해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 관련 지원 역할도 맡고 있다.

1) 남북 사회문화협력 주요 법령 변화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경제협력, 인도적지원에 비해 폭넓은 인적 접촉과 교류, 다양한 부문, 영역의 협력 요구, 의제를 망라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상호이해 증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은 오랫동안 사회문화협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최근 한국 사회 내 민족 정체성, 통일 필요성 인식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나,³⁾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양질의 접촉'이 상호관계에 갖는 긍정적 함의(접촉이론), 한국 사회의 냉전문화, 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 의미를 가진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 이산가족의 서신 거래와 왕래 등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항로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명시되었다.⁴⁾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9조~제14조는 사회문화영역 남북교류 관련 조항으로 특히 제9조는 협력의 세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⁵⁾

<남북교류협력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사회문화협력 관련 범위를 명시하고,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2005년 통일부 고시)은 남북한 주민의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향유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대한 활동 및 제반 활동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제8조(기금의 용도) 제2호(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에서 사회문화협력 사업을 위한 기금 활용을 명시했다.⁶⁾

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외식조사』, 2022.

4) 전영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사회문화 교류,” 『세종논평』 No.2020-14, 2020,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itm=&txt=&pg=1&seq=5380>

5)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방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이우태·성문정·허정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9-12, 2019, pp.145-146.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선언 합의, 개별 영역 남북회담에서 이뤄진 남북간 합의서들이 존재한다. <6·15 공동선언>은 제4항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했고 2007년 <10.4 공동선언>은 제6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사회문화협력 거버넌스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전문가 5명 내외가 포함되는 18명 이내 위원(국무총리 임명,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부문, 영역의 사회문화협력은 해당 협력사업 회담, 합의, 결정 등에 기초해 발전되어왔다.

2) 남북 사회문화협력 주요 조직, 제도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여성, 청년, 농민, 노동자, 교육, 언론 등 각계각층의 남북 공동행사를 비롯해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술, 종교, 체육, 출판, 방송, 언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협력 사업을 포괄한다. 2000년 6.15 첫 남북공동정상회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협력은 2000년대 중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을 계기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 교류협력사업 부침에도 불구하고 체육교류협력, 저작권교류협력,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속하는 안정성을 보였다.⁷⁾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의 실천 과정에서 교류협력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되면서 사회문화협력 사업상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1) 6.15공동선언실천 공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공동위원회는 2000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로 2005년 3월 결성되었다. 6.15 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된 남북 공동행사는 공동행사준비위원회 형태로 열렸고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 3자 연대 형식으로 6.15 공동위원회가 합의된 것이 2005년이다. 남북은 6.15 기념행사, 8.15 행사, 10.4선언 행사를 교차로 개최하여 금강산(2002.6), 인천(2004.6), 평양(2005.6), 광주(2006.6), 평양(2007.

7) 임채선·오동훈·이재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3(4), 2020.

6), 금강산(2008.6)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 냉각으로 2009년부터 공동행사는 중단된 상태다. 2018년 한반도 평화과정이 전개되면서 공동행사가 기대되었으나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다.

[표 1] 남북 주요 공동행사 (2004-2009)⁸⁾

일시	행사
2004.11	- 남북해외 통일단체 대표회의(금강산)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 등 4개항 합의
2004.12-2005.1	-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 북측준비위원회 결성,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발족
2005.3	-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식 및 1차 회의(금강산)
2005.3-4	- 남북농민대표자상봉모임(개성), 남북농민대표자 연대회의(금강산)
2005.5	- 남북대학생 상봉모임(금강산)
2005.6	-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평양)
2005.7	- 민족작가대회(평양, 백두산)
2005.8	-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서울)
2005.9	-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평양)
2005.12	-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개성)
2006.3	- 남북여성 대표자회의(금강산) -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개성)
2006.4	- 남북농민단체 대표자회의(개성)
2006.5	-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금강산)
2006.6	- 6.15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광주, 전남)
2006.11	- 남북언론인 통일토론회(금강산)
2006.12	- 민족공동행사 백서 발간
2007.4-5	-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창원) - 남북언론인대표자모임(평양) - 남북여성대표자모임(평양)
2007.6	- 6.15공동선언발표 7주년 민족통일대축전(평양)
2007.9	- 3차 남북농민통일대회(평양)
2007.10	- 남북청년학생연대모임(금강산)
2007.11	- 남북언론인모임(평양)
2008.4	-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 (금강산)
2008.5	- 2008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금강산) - 남북여성대표자 회의(금강산) -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금강산)
2008.6	- 6.15공동선언발표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2009.4	- 남북여성대표자모임 정부의 불허로 무산

8)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023. <https://www.i615.net/sub/history.php> (검색일: 2023.8.30.)

(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과정에 남측 역사학자들도 참가하여 평양에서 북측 역사학자들과 만나 공동학술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2003년 3월 평양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8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남북 학술부문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공동조직으로서 역사학자협의회가 출범했다.⁹⁾ 2004년 2월 평양에서 발족식(남측 초대위원장: 강만길, 북측 초대위원장 허종호)을 가졌고 이후 역사학자협의회는 크게 남북 공동학술회의 및 학술연구와 남북 공동 문화유산 조사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자와 관련해 ‘한일합방의 불법성 문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근로자 강제동원 문제’, ‘국호의 영문표기 문제(Corea와 Korea)’,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학술토론회(2004.9)’,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2005.11)’, ‘일제강점 100년 남북공동 학술토론회(2010.4)’ 등을 개최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고구려 유적 보존사업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남북 공동 실태조사’(2006년, 2007년, 북측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4년))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2007년 5월부터 2018년 12년까지 총 8차 진행, ‘개성역사지구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2013년))가 대표적이다.¹⁰⁾

전 시대를 망라한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은 과제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을 ‘고려특별위원회’가, 고구려 유적 공동 실태조사 사업은 ‘고구려특별위원회’가 진행했다. 역사학자협의회와 함께 실제 공동발굴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이 공동조사단 운영을 총괄해왔으며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바탕으로 문화재청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9) 남북협회, 뉴스레터 4월호 인터뷰, <http://webzine.sonosa.or.kr/201904/3> (검색일: 2023.8.30.)

10)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디지털기록관. 2023. <http://www.manwoldae.org/front/story/excavation.do?folder=story&address=excavation&ald=> (검색일: 2023.8.30.)

(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의 “민족어 공동사전편찬”을 목적으로 남북 언어학자들이 공동편찬사업에 합의, 참여해 남북은 물론 해외에 흩어진 ‘겨레말’을 집대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2월 남북 언어학자(문학자)들로 이뤄진 편찬위원회가 결성되고, 2006년 1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인이 설립되었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는 올림말분과, 집필분과, 새어휘분과, 정보화분과로 구성되어 공동편찬회의를 통한 올림말 선정, 새어휘 채집·선정, 원고집필 및 상대측 집필원고 교차 검토, 사전평찬을 위한 각종 집필 프로그램 개발, 겨레말큰사전을 위한 남북 공동 어문규정 편람 작성 등의 거버넌스를 장기 구축해왔다.

2005년 출범 이후 2015년 12월까지 25차례 남북공동편찬회의가 개최되었고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올림말 총 33만여 개(기존어휘 23만+새어휘 10만) 중 약 30만 7천여 개 올림말 선별 완료, 남북 및 해외 지역 겨레말과 1900년대 이후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7만 7천여 개 새어휘 선별, ‘겨레말큰사전’ 적용 어문규범으로 자모 배열순서,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문장부호 등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하고 남북의 차이가 큰 두음법칙, 사이시옷 표기 등에 대한 합의를 남겨둔 상태이다. 공동편찬사업은 2007년 4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국회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갱신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¹¹⁾

1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은 2007년 4월 27일 제정 이후 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개정을 토대로 관련법 및 사업을 연장해왔다.

1) 남북 인도협력 주요 법령 변화

남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3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속합의서>를 채택했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쌍방이 노력할 것을 적시했다. <부속합의서> 제3장 제15조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왕래 문제 및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남북 적십자사 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북핵위기가 심화하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분야별 후속회담을 거부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은 진전을 보지 못한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 교환에 합의하고 적십자회담을 통해 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에 합의해 2008년까지 17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3월 매년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¹²⁾ 한편 2010년 3월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들의 생사확인 및 명예회복 사업을 뒷받침했으며,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지정하고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했다.

이산가족 외 남북간 인도협력은 1995년 8월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자연재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지원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지원으로 확대된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고 적십자사를 통해 15만 톤의 식량을 직접 지원한 이래로 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식량 중심의 긴급구호에서 농업 복구를 위한 비료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업 외 보건의료 분야 남북 회담도 진행되었다. 1999년부터 민간 차원의 개별 대북지원이 허용되면서 민간 대북지원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민간에서는 북한의 지원 호소 이후 1996년 6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북지원단체를 구성해 식량지원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인 것을 비롯,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진다. 초창기 대북 식량지원은 1997년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창구 단일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³⁾ 김대중 정부 들어 단계적으로 민간

12) 박광연. 2023. “매년 추석 전전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경향신문』, 3월 28일.

13) 민병기·박재정. 2009. “대북식량지원 운동의 정치기획구조와 남남갈등: 김영삼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대북지원 범위를 확대해 1999년 2월 각 단체의 대북지원 반출 신청을 개별 검토해 허용하며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가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민간의 대북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¹⁴⁾

1999년 10월부터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150개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해 왔다. 이외에도 2021년 9월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되었다. 2023년 3월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일회성 사업은 반출 승인만,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대북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4년부터는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참여하는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현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이하 민관협)가 구성되어 대북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통일부와 개별 단체, 개별 단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¹⁵⁾ 그러나 민관협 운영위원회 개최가 2011년 이후 개최가 중단되었다가 2019년 재개되는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 민관협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또한 대북인도적지원 사업 전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도지원은 <북한인권법>¹⁷⁾ 내의 한 조항으로만 언급되고 있어 북민협을 비롯한 민간단체는 별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¹⁸⁾

43(3), pp.99-124.

14) 이금순. 2003.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15) 강동완, 201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약칭:북민협)의 네트워크 구조 및 동향: 한국정부와의 관계 및 조직 내부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pp. 217-245.

16) 강동완, 2010,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관협력체계의 평가와 발전방안: 2013년 남북한 정세 변화를 중심으로.” 『2013년 <북민협> 제1차 워크숍 자료집』 2013.1.25. p. 36.

17) 북한인권법 제8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김보근. 2016. “인도적 대북 지원, 정부 독점 말고 민관협력기구서 논의해야.” 『한겨레』, 12월 18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3774.html> (검색일: 2023.9.4.)

2021년 발의된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인도협력 사업 민관협력위원회 설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작동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협력 관련 법제화는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1996년부터 정부 당국 차원에서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WFP, WHO, UNICEF 등을 통해 농업,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중 일부는 평양에 상주인원을 두고 기구간 공동지원호소(consolidated appeal)를 통해 모금을 진행해 식량지원과 농업복구, 보건, 식수공급과 위생(WASH),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도적지원을 실행해 왔다. 국제기구 외에도 국제적십자연맹 등 INGO 또한 상주인원을 두고 활동해 오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로 상주인원이 철수한 바 있다.

2) 남북 인도협력 주요 제도, 조직

남북 인도협력은 크게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대북 인도적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가족이 본격화된 것은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 지원을 요청한 이후의 일이다. 당국과 민간, 국제기구 차원의 식량 지원이 실시되었다. 인도적지원은 식량 등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에서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농자재, 농기구 등 농업 생산성 증대 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등으로 지원 영역이 다변화되었다.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직접 지원 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개별 민간단체의 지원이 실시된다. 국제기구와 EU 차원의 국제 NGO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지원 또한 지속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인도지원’ 목적의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 단체나 국제기구는 직접 또는 소속 국가를 통해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7월 현재 유효한 면제 사례는 30건이다. UNICEF, WFP, WHO, FAO 등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사, 한국기독교친우회, 이그니스 커뮤니티, 샘인터내셔널, 유진벨재단 등 개별 단체가 개별 신청을 통해 제재 면제를 받았으며 경기도, 남북경제협력연구센터, 여의도순복음교회재단, 연탄나눔운동 등은 한국 정부를 통해 제재 면제를 신청해 1718위원회 승인을 받았다.¹⁹⁾

1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3.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 (검색일: 2023.8.30.)

(1)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북한적십자사와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수해복구와 비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지원 활동을 벌인다. 1971년 8월 북한적십자사에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해 최초의 남북대화를 실현했다. 1971~74년 동안 24차례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과 본회담 진행과 관련한 18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7차례의 남북적십자 대표회담과 25차의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1980년대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진전을 이룬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합의된 이후 남북적십자사 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문제 외에도 1990년대 대북인도적지원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담당했다. 1995~1999년 동안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 창구를 한적으로 단일화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주요 창구로 기능했으며, 이후에도 자체 모금을 통한 비료 지원과 쌀과 옥수수 지원, 수해 지원 등을 실행했다. 1995~2022년 전체 1,787억 원을 지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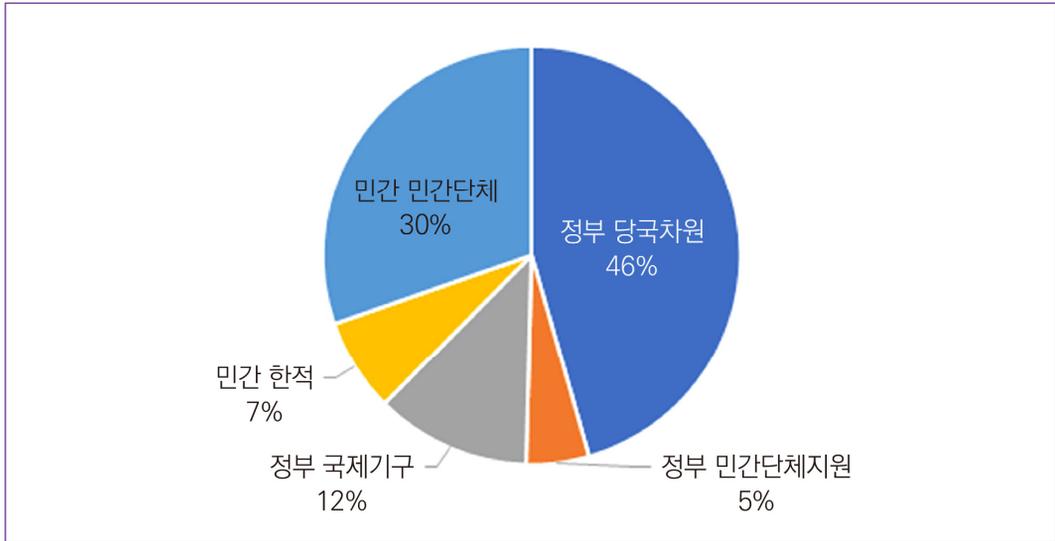
(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1999년 4월 20여개 단체가 참여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는 NGO 협의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를 결성했으며, 202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대북지원단체간 협력과 정보 교류, 정부 및 국제기구, INGO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공동행동규범>을 만들어 지원사업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높여왔으며, 2013년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을 토대로 ‘인도적 대북지원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분야별로 △농축산 △환경산림 △보건의료복지 △일반구호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66개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북민협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150개 인도적지원사업자 승인 단체 중 44%를 차지한다. 각 대북지원단체는 개별 지원이 가능해진 1999~2022년 동안 7,491억원을 지원해 왔다. 대북지원은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시작해 농자재, 농기구 지원,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등으로 다양화되어 △농업 개발 △보건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4년 북민협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관협을 구성해 정례 회의가 개최하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으나 2011년 이후 민관협 개최가 중단되었다가 2019년 재개되었다.

[그림 5] 자원주체별 인도적지원 누계 현황 (199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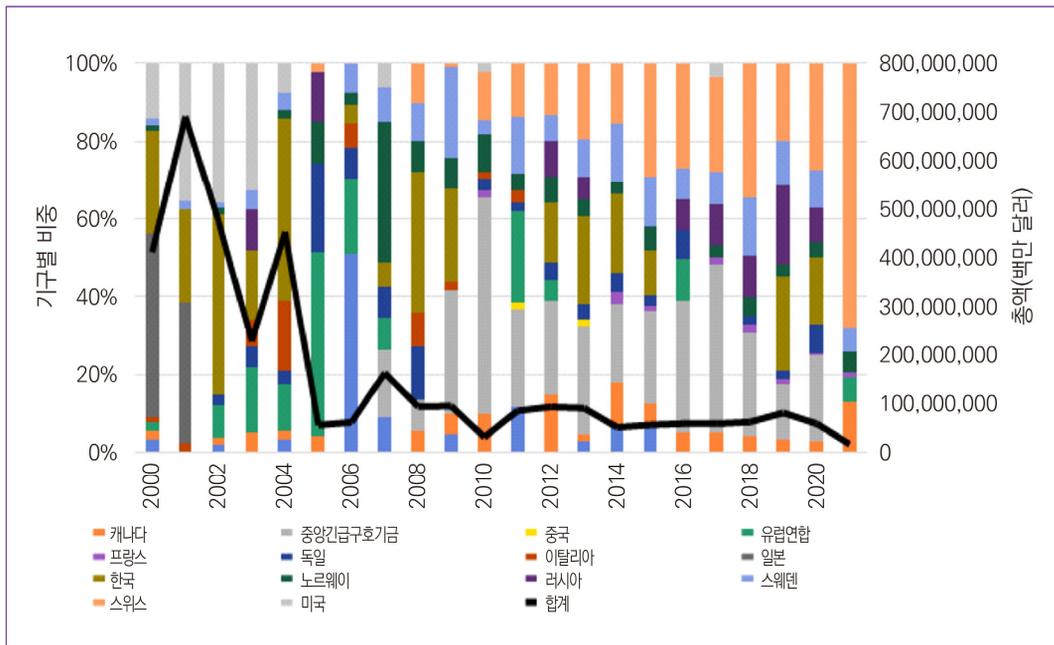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2023.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TotalInfo.do> (검색일: 2023.8.30.)

1) 국제기구

유엔기구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 협의해 5년에 한 차례씩 전략계획(DPRK UN Strategic Framework)을 수립해 인도적 지원을 실행 중이다. 평양 상주사무소에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기구가 활동 중이며 2017-2021 전략계획 하 우선순위는 △식량과 영양 안보 △사회 개발 서비스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4개가 꼽힌다.²⁰⁾

【그림 6】 기구별 국제사회 대북인도지원 추이 (2000-2021)



비고: 꺾은선 그래프는 각 연도별 상위 10개 단위의 대북지원 총액. 막대그래프 범례는 상위 10개국 중 2회 이상 등장한 단위 표시. 관련 데이터는 각 유엔회원국, 유엔기구, 공공 및 민간기구가 UNOCHA에 보고한 액수 기준.

출처: 필자 정리, OCHA. 2023. The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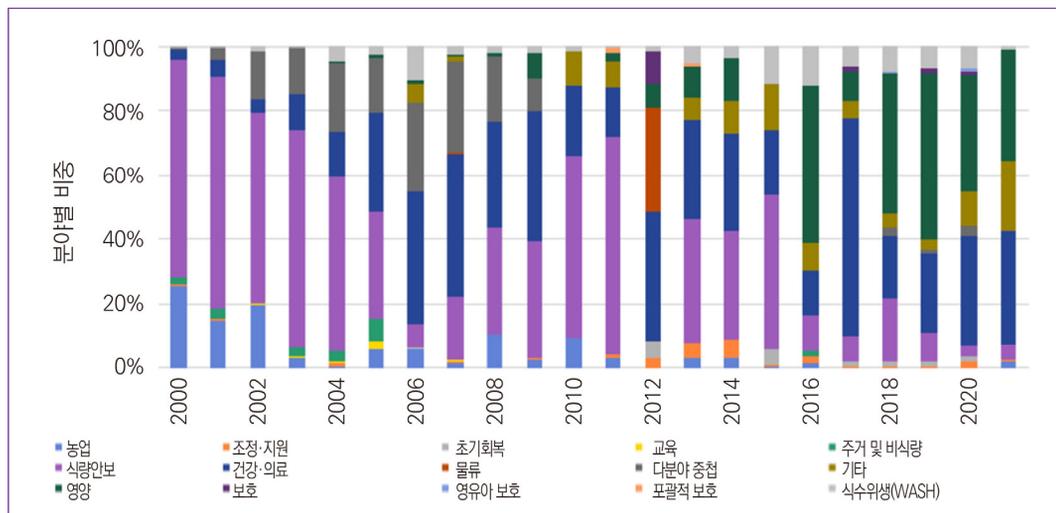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21> (검색일: 2023.8.30.)

20) United Nations DPRKorea. 2023. <https://dprkorea.un.org/en>. (검색일: 2023.8.30.)

국제기구는 인도적지원 분야, 사회인프라 중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초점을 둔다.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을 해 온 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으로 지속적 구호사업을 진행하며,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매년 ‘곡물작황평가’를 진행한다. 유니세프는 영양, 건강, 교육 지원을 진행하며 UNFPA는 2008년 인구조사와 2014년 사회경제인구건강조사 사업을 시행했다. 북한은 2007년부터 유엔에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후 국제기구는 북한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¹⁾

유엔기구의 대북 지원은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통한 자금 비중이 높은 편이며 미국,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 개별 국가 또한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 왔다. 각 국제기구가 공동호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대북지원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의 각 행정부가 시기별로 WFP, UNICEF, WHO를 통해 대북지원을 해왔으며, 1996~2020년 기간 총합 26,676억 달러를 지원해 왔다. 이중 WFP를 통한 지원이 56.7%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WHO 지원 24.9%, UNICEF 15.0%를 차지한다. WFP를 통한 쌀과 옥수수 지원,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 WHO를 통한 의약품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7] 분야별 국제사회 대북인도지원 추이 (2000-2021)



비고: 데이터는 각 유엔회원국, 유엔기구, 공공 및 민간기구가 UNOCHA에 보고한 분야 기준.

출처: 필자 정리, OCHA. 2023. The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21> (검색일: 2023.8.30.)

21) 문경연·이수훈·전명수.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20년(1995~2016): 성과와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6(2), 2018, pp.3-33.

2) 국제 비정부기구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비정부기구(INGO)는 6개로 △식량안보와 농업 △영양 △보건 △물, 위생(WASH) 분야에서 대북지원을 실행한다. EU가 지원하는 INGO 중 프리미어 어전스 인터 내셔널(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EUPS1),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EUPS3), 독일 세계기아구조(Deutsche Welthungerhilfe·EUPS4),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EUPS5), 미션이스트(Mission East)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해 인도적 지원을 실행한다.²²⁾

각 단체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는 한편 개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경 봉쇄가 단행되기 이전인 2020년 현재 국제적십자사(IFRC),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이 상주 인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유진벨재단, 아그리컨설팅(AESA) 등 단체가 기술지원과 물자 지원을 위한 인도적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22) OCHA. 2020. *DPR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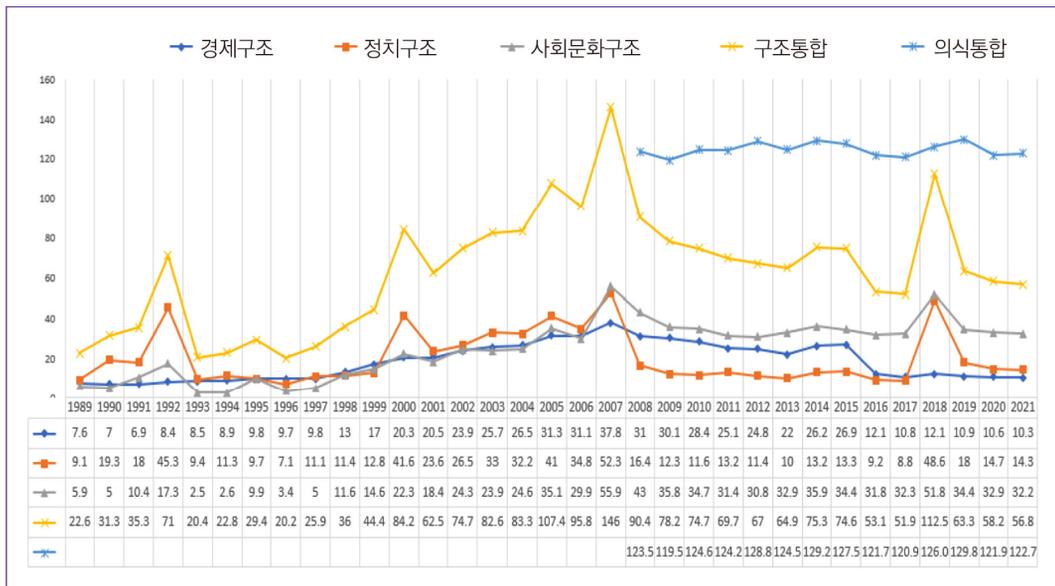
<https://dprkorea.un.org/en/44951-dpr-korea-needs-and-priorities-plan-2020#:~:text=DPR%20Korea%20Needs%20and%20Priorities%20Plan%202020%2008,partners%20for%20targeted%20assistance%20to%205.5%20million%20people> (검색일: 2023.8.30.)

6

결론을 대신하여: 2단계 연구 방향

2008년부터 매년 남북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 수준을 측정해온 <남북통합지수>에 따르면, 탈냉전 이후 부침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는 2021년 기준 179.5점(1000점 만점)으로 통합률 18%에 머물고 있다. 영역별로는 경제영역 통합률 15.5%, 정치영역 15.3%, 사회문화 22.8% 통합률을 보여 남북통합지수가 설정한 10단계 중 1단계(경제: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 1단계(정치: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2단계(사회문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에 그치는 형편이다. [그림 8]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통합 수준의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8년 한반도 평화과정 진전으로 ‘효과’를 보았을 뿐, 200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8]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1989년-2021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북통합지수 2022』, 2023, p.11.

본 브리프는 탈냉전기 남북관계를 통틀어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지원의 법령, 조직 및 제도 변화를 개괄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거버넌스의 구조를 파악했다. 본 브리프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수시과제 1단계 연구를 종합한 결과로, 남북의 정치, 군사적 관계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지원 협력사업이 위축되어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경제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관계 진전, 통합의 심화가 결코 정치·군사적 영역의 통합으로 확산(spillover)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림 8]에서 정치·군사적 영역의 통합 추이가 남북통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 추이와 대동소이한 그래프를 보인다는 점으로부터, 우선 남북한 간 공존의 제도적 틀의 고안 및 정착을 통한 정치적 문제해결 노력이 남북통합의 심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2단계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내외 정치·안보상 변화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남북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의 중요성은 법제화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의 상대적 성공과 여전히 법제화가 미비한 영역에서 기존의 거버넌스 작동이 부진한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은 관련 국회법 제·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법적 기반을 확보한 예외적 사례로 의의를 평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북 인도협력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대북지원조차 정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법제화 요구가 제기되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는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 행위자 조직의 형성·발전과 함께 경제협력(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과 사회문화협력(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 일부 사업에서 일정한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가 이뤄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 30여 년 다층적 민간 행위자 조직의 교류협력사업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정당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실현에 있어 이들의 역할, 위치에 대한 안정적 법제 기반의 마련은 절실한 과제이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민관 거버넌스는 헌법 3조 및 국가보안법과 헌법 4조 및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이중적 규율성 속에서 정치, 군사안보적 환경 변화에 취약한 남북관계 성격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언제든 침식될 수 있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향후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수행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조 파악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 남북관계 사업에 종사했던 영역별 주요 관계자들의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제 남북관계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거버넌스가 작동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전의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미래전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강동완. 201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약칭:북민협)’의 네트워크 구조 및 동학: 한국정부와의 관계 및 조직 내부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 강동완. 2013.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간협력체계의 평가와 발전방안: 2013년 남북한 정세 변화를 중심으로.” 『2013년 <북민협> 제1차 워크숍 자료집』 2013.1.25.
- 김보근. 2016. “인도적 대북 지원, 정부 독점 말고 민간협력기구서 논의해야.” 『한겨레』 2016년 12월 18일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3774.html> (검색일: 2023.9.4.)
- 남북협회. 2019. “인터뷰: 다시,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 남북협회 뉴스레터 4월호 인터뷰, <http://webzine.sonosa.or.kr/201904/3> (검색일: 2023.9.4.)
- 대판(전) 2008. 4. 17, 2003도758
- 문경연·이수훈·전명수. 2018.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20년(1995~2016): 성과와 과제.” 『세계지역연구 논총』. 36(2).
- 민병기·박재정. 2009. “대북식량지원 운동의 정치기회구조와 남남갈등: 김영삼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3).
- 박광연. 2023. “매년 추석 전전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경향신문』, 3월 28일.
- 박성철. 2015.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 『법학평론』, 5.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남북통합지수 202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2022 통일의식조사』.
- 이금순. 2003.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이우태·성문정·허정필. 2019.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임채선·오동훈·이재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3(4).
- 전영선. 2020.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사회문화 교류,” 『세종논평』 No.2020-14,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itm=&txt=&pg=1&seq=5380>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7. 『개성공단 5년』. 서울: 통일부.
- 헌재 1997. 1. 16, 92헌바6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21년 제정.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1990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

〈북한인권법〉 2016년 제정.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2021년 1월 14일 제안 후 국회 계류.

홈페이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023. <https://www.i615.net/sub/history.php>(검색일: 2023.8.30.)

OCHA. 2020. DPR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https://dprkorea.un.org/en/44951-dpr-korea-needs-and-priorities-plan-2020#:~:text=DPR%20Korea%20Needs%20and%20Priorities%20Plan%202020%2008,partners%20for%20targeted%20assistance%20to%205.5%20million%20people.>

(검색일: 2023.8.30.)

OCHA. 2023. The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21> (검색일: 2023.8.22.)

United Nations DPRKorea. 2023. <https://dprkorea.un.org/en> (검색일: 2023.8.30.)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디지털기록관. 2023. <http://www.manwoldae.org/front/story/excavation.do?folder=story&address=excavation&ald=> (검색일: 2023.8.30.)

(검색일: 2023.8.30.)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23. <https://www.kidmac.or.kr/> (검색일: 2023.8.3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23. <https://www.gyeoremal.or.kr/> (검색일: 2023.8.30.)

대북지원정보시스템. 2023.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TotalInfo.do>

(검색일: 2023.8.3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2023.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comn/login/plogin/cpttrLogin.do> (검색일: 2023.8.30.)

(검색일: 2023.8.30.)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2023. 연도별 기금현황

<https://www.koreaexim.go.kr/se/HPHFSE054M01> (검색일: 2023.8.3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3. Humanitarian Exemption Request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 (검색일: 2023.8.30.)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인 쇄 2023년 10월 16일

발 행 2023년 10월 16일

발 행 인 김현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주)명진씨앤피(02-2164-3000)

©2023 국회미래연구원

ISSN 2983-4392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